



- ▶ 2005. 2. 배포
- ▶ 총 2 쪽 (사진없음)

보 도 자 료

▶ 산업보건환경과 김정호사무관
T E L : 507-0206
E-MAIL : kjhml@molab.go.kr
F A X : 503-4491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노동부,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 구성·운영

- 부실 작업환경측정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 혁신 방안 마련 방침 -

- 노동부는 경기도 화성 소재 LCD·DVD 부품제조업체에서 세척작업을 해 오던 외국인 근로자의 노말렉산 중독과 관련하여,
 -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결과가 사업주에 의한 작업량 축소, 유해작업 근로자의 측정누락 등으로 인해 실제 작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
 - '05.2.17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부실측정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를 한국 산업안전공단(이사장 김용달)에 설치하고
 - 산업위생·산업의학분야 학계 전문가와 노·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

-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법 체계,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'05.7까지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.
- 이번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뿐 아니라 특수건강진단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므로
-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병행하여 산업보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.

【우리나라 작업환경측정제도】

- 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
- 목적 :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실태를 측정·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 등 조치하여 근로자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
- 대상 유해인자 : 소음, 분진, 노말핵산 등 191종
- 측정주기 : 6월에 1회 이상
 - 3월에 1회 이상 :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노출기준을 초과 등
 - 1년에 1회 이상 : 작업공정 변화 없고, 최근 2회 노출기준 미만
-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: 사업장내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(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 가능)

□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현황

- 지정기관수는 116개소이며, 이중 위탁기관은 101개소임

지정기관수	위탁측정기관	자체측정기관수	비고
116개소	101개소	15개소	지정기관중 특수건강진단기관은 86개소(74.1%)임